

Ⅲ. 保險産業의 保險契約者 保護 裝置

1. 우리나라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 보험산업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로는 첫째, 감독기관(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와 둘째, 현재는 예금보험제도에 통합운영되고 있는 보험보증기금(舊) 제도가 있음.
- 동제도들은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88년의 보험업법 개정시 도입되었으며, 그후 '89. 4월에 신설되었음. 도입 이유는 보험시장의 본격적인 대내·외개방 추진에 따라 경쟁심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도산 가능성의 우려가 높았고,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임.

가. 保險契約者 保護預託金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설 보험회사의 사업초기 경영부실로 인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임.
 -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예탁금 규모는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중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30/100)의 금액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함.
 - 대부분의 신설사들은 당시 납입자본금 (100억원)을 기준으로 30억원, 또는 일부 외국사들은 9억~60억원을 예치하였음.
 - 현재 '98.1월 기준으로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총 2,033억원에 (생명보험 : 2,003억원, 손해보험 : 29억원)이르고 있음.

<표 8> 연도별 보험사업자 보호예탁금 납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탁일자	예탁원금	운영수익	운용금액
생명보험	'89 ~ '93년 *	80,180	120,169	200,349
손해보험	'89 ~ '91년	1,362	1,563	2,925
합 계	-	81,542	121,732	203,274

(주) * 단, AIA생명은 '97년 1월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20년사」, 1998.3, pp.284 ~ 285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은 개별 보험회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탁금 반환사유가 발생시, 운용수입과 함께 원리금이 반환됨.
 -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이후 이익금 발생시
 - 보험사업자의 해산시
 - 외국보험사업자가 국내에서 인가받은 보험사업의 폐지시
 -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할 시

- 실제로 '98년말까지 보호예탁금의 반환사례는 총 9건으로 외국 보험사업자의 철수 3건, 생보사의 해산(퇴출) 4건, 보증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재원 2건 등임.

-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예금보험제도와 일부 중복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의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동제도는 보험보증기금과는 달리 신설 보험회사가 사업초기에 도산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존재하는 별도

의 보호장치 제도로 해석되어야 함.

- 향후 보험시장 진입·퇴출의 자유화 추진시 예상되는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의 차별화가 도입될 경우에 현행 최저 납입자본금(300억원)보다 적은 규모의 자본금으로 무리한 영업 추진시 과거에 비하여 도산위험이 더 증가하므로 동제도의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임.³¹⁾

나. 保險保證基金 制度

- o 보험보증기금이란 보험회사의 파산 등 지급불능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 및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 것임.³²⁾
- 보험보증기금은 향후 예상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자가 출연한 기금임.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개별자산으로서 일정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반환되는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름.

31) 최근 보험사업허가 제도의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현행의 일괄허가 방식에서 그룹별허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검토중임. 보험사업 허가시 고려되는 종목별 시장점유율 및 지급여력비율 달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단일그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에 허가종목에 따라 최저납입자본금의 규모도 하향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사업초기의 위험도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보호예탁금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32) 보험보증기금에 대한 사항은 지난 '97.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98. 1월 보험업법 개정시 관련 법규가 삭제되었음. 그리고 현재 동기금이 예금보험기금에 통합되어 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 제IV장에서 다룬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추진될 예금보험기금의 개정 방향과의 비교를 위하여 통합이전의 보험보증기금 제도로 운영되었던 상황중 일부 주요내용을 취급하기로 함.

- 당시 동제도는 재보험 및 보증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89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중 법인계약을 제외한 개인보험 및 가계성보험 계약이 해당됨.
- 따라서 재보험사 및 보증보험사는 출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대상 보험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나, 지난 '97.12월에 향후 2000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보험 및 법인계약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음.

- 보험보증기금의 재원은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정부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되지만, 보험사업자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 보험사업자 출연금은 당시 보험업법에서 직전 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험감독관련 보험예규상의 “보험보증기금의 구성에 관한 지침”(보험 45400-228, '93. 10.21)에서 명시한 바 있음.

- 보험사업자의 출연금³³⁾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의 표준출연율은 직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0.1%로 하고 설립경과년수,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따라 각 보험사업자별로 다음의 <표 9>에서 처럼 부분적인 차등요율을 적용³⁴⁾한 바 있음.

33) 즉 현재 통합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험료에 해당함.

34) 당시의 표준출연율에 대한 차등 적용은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예금보험료 차등화방안에서 의미하는 차등요율과 다소 차이가 있음. 당시의 차등화 방법은 준비금적립상태를 반영하는 K율 수준에 의거하여 소폭의 차등화율(0.005%p)을 적용하였음. 다만 기본적인 형태는 현재 논의 중인 예금보험료 차등화 방안, 즉 지급여력 및 재무건전성 수준에 의한 차등화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표 9〉 보험사업자별 보험보증기금(舊) 출연율

구 분		보험료 출연율
사업경과 10년이상 및 누적 결손이 없는 경우	인보험(생명보험) 보험사업자	○ K율에 따라 출연율을 조정하였음. (0.1% - K율 * 0.005%), ○ 단, 최저한도 출연율 비율은 0.095% 임.
	손해보험사업자	○ (0.1% - [(5 - 연간 보유보험료 총액 / 보험계약자잉여금) * (1/3)] * 0.005%, ○ 단, 최저한도 출연율 비율은 0.095% 임.
사업개시연도 10년차 미만		○ 0.105%

(주) K율이란 생명보험 보험계약준비금의 계산중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적립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K율 100%는 순보험료식 준비금적립을 의미하며, K율 0%는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적립을 의미함.

$$K율 = (실제 적립준비금 - 해약식 준비금) / (순보식준비금 - 해약식 준비금)$$

- 실제로 제도도입이후 각 보험사업자의 보험보증기금 출연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³⁵⁾

〈표 10〉 연도별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소계
생명보험	3,974	4,305	8,568	12,670	16,807	18,798	22,117	26,962	27,239	141,440
손해보험	573	1,205	1,865	2,736	3,836	4,403	5,553	7,741	9,958	37,871
합계	4,547	5,510	1,0433	15,406	20,643	23,201	27,671	34,703	37,197	179,311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1998.3, pp.287 ~ 288

35) '98.12월말 기준으로 보험보증기금 적립액은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생보사 2,764억원 및 손보사 747억원으로 총합계 약 3,511억원임.

-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보전금³⁶⁾ 지급은 '89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가계성 및 개인보험을 대상으로 하였음.
- 보전금의 규모는 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시에는 보상금액으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해약환급금, 손해보험은 미경과보험료로 하였음.
- 보전금의 최고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보험사업자의 추가 출연으로도 보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액 지급할 수 있었음.
- 한편 보험보증기금만으로 보전금의 지급이 불충한분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출연금의 납부로 보험사업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였음.³⁷⁾

36) 보전금이라 함은 감독원장이 보험보증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수취할 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또는 제지급금에 갈음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보증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이는 현행 예금보험기금 제도상의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동일함.

37) 보전금 부족시 추가출연에 대한 조항 및 경영위험 초래시 출연금 납부 유예 조항은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시행령 제14조 2항, 4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다만 과거 보험보증기금 또는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추가출연에 대한 사항은 향후 예상되는 사후각출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즉 추가출연에 대한 규모 자체가 기존의 사전각출제에 의한 보험료를 상회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사후각출제의 보험료는 이와는 별도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각출보험료임.

2. 外國의 保險契約者 保護裝置

가. 美 國³⁸⁾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 뉴욕州 계약자 보호예탁금(deposits)의 설치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본주에서 사업인가 면허를 받기 이전에 보험사업자별, 보험종목별로 일정수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가증권으로 예치해야 함.
 - 생보사 및 손보사에 관계없이 보험사업자(법인) 설립 신청후 해당주의 보험감독관으로부터 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금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감독관에게 예탁하는 것임.
 - 단, 예치된 유가증권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에서 명시한 채권³⁹⁾의 현재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정된 유가증권 금액으로 함

- 한편 보호예탁금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보호예탁금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예치금(deposits)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자는 예치된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하여 권리를 갖지 못함. 따라서 법률상으로 보험감독청에서 소유·보관하는 것으로 판단됨.

38) 뉴욕주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음.

39) 법 제1402조 b항1,2에 따르면 최저자본금 및 잉여금의 60% 이상이 투자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국공채

- 계약자 보호예탁금 규모는 보험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주내 생보사의 경우 최소규모는 \$10만임. 단, 1982년 7월 1일이후에 최초 면허를 받은 회사는 \$20만임.
 - 손해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종류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때는 \$50만, 또는 면허종목에 대해 요구되는 납입자본금 및 최저잉여금중 작은 쪽의 금액을 예탁하여야 함. 단, 보험종류중 복수의 종목을 영위하는 손보사 (주식회사)는 최저 \$40만임.
 - 재보험 또는 해외물건의 인수를 하는 경우는 \$300만 이상이 요구됨.

- 예탁금의 지급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 예치 유가증권의 총시장가액이 법에서 요구한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감독관은 초과한 금액내에서 예치된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의 필수 예치금액의 총시장가액이 미국내 미지급부채를 포함한 지급준비금 총금액의 200%를 상회하거나, 또는 향후 미국내에서 신계약모집을 중지할 경우에 동기준을 초과한 범위내에서 예치 유가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

2) 保險保證基金 制度

- 미국의 보험보증기금 제도는 聯邦정부 차원의 은행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FDIC)와는 별도로 州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제도임.

- 현행 미국의 보험보증기금 제도의 기본 구조는 全美保險監督官協議會(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지

난 '69년(손해보험)과 '70년(생명보험)에 채택한 보증협회모델법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에 근거하고 있음.⁴⁰⁾

- 동모델법에 근거하여 손해보험 및 생명·건강보험 각각 현재 대부분의 州에서 별도의 비영리 민간법인 형태로 보증협회 (Guaranty Association)가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인가시 동협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손해보험 보증기금의 전국 단체로 전미 손해보험보증기금협회 NCIGA(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와 생명보험 보증기금의 전국단체로 전미 생명·건강보험보증기금협회 NOLHIGA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이 각각 있음.

- 보증협회의 산하에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보험보증기금이 대부분의 모든 州에서 운용되고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69년~'74년 사이에 47개주에서 비영리 손해보증기금이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52개주에 설치운용 중임.
 -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보다 늦게 출범하여 '79년까지 겨우 2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83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52개 주에서 설치운용중임.

40) 뉴욕주의 경우 지난 1941년에 최초로 생명·건강보험보증기금협회를 설립한 바 있으나, '60년대 후반 이후 당시 자동차보험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사회 관심화가 이루어졌음. 즉 '60년대 자동차보험의 경영악화로 많은 손해보험회사도 도산하게 되자 NAIC는 1969년 손해보험 보증기금모델법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을 채택하였고, 1970년에는 생명보험에서도 생명·건강보험 보증기금모델법(Life/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이 채택되었음.

- 보험보증기금의 보전방법은 어느 州의 특정 보험회사가 지급불능(insolvent) 상태에 있거나, 재무불건전(financial impaired) 상태의 경우 보전행위가 이루어짐. 보전행위는 보증(guarantee), 포괄인수(assume), 재보험(reinsurance)로 대별할 수 있음
 - 불건전회사는 해당 보험사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州정부 보험감독관이 판단하거나,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및 재건(rehabilitation) 상태에 있는 회사를 의미함.
 - 불건전회사를 보전대상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보험사의 완전한 파산(insolvency) 이전에 보전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기 위함임
 - 지급불능회사는 법원에 의한 청산절차는 밟는 회사를 의미함

<표 11> 미국 보험보증기금의 보전행위

구 분	보 증	포괄인수	재보험
내 용	보험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협회가 이를 부담함	보험계약을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재보험협정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장래 발생하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재회사가 보전함
보증자·인수자·수재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보증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짐	인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짐	수재회사의 보전의무는 출재회사에 대한 것이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아님

- 보험보증기금이 손해보험과 생명·건강보험으로 양분되어 있고, 각 보증기금의 형태 및 운용이 州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각 보험보증기금의 운용형태는 다음과 같음.

가) 損害保險保證基金⁴¹⁾

o 보증기금내의 계정(account) 구분 형태 :

- 대부분의 州⁴²⁾에서 근로자재해보상(worker's compensation) 보험, 자동차보험, 기타보험 등으로 구분한 3개의 별도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州⁴³⁾에서는 단일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2개 계정 또는 4개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한 州⁴⁴⁾도 상당 수 있음.

o 보호대상 및 보전금 한도규모 (maximum claims) :

- 거의 모든 州에서 통상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신용보증보험(surety and credit insurance), 재보험, excess & surplus insurance 보험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이외에도 일부 州(18개주)에서는 불법배상책임보험(punitive damages)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부분의 州⁴⁵⁾에서 근로자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 전액보장)을 제외하고, 1인당 최고한도액은 평균 \$30만이며, 일부 州는 최고 \$15만 또는 \$50만으로 제한하고 있음.⁴⁶⁾

- 또한 일부 州(25개주)에서는 계약자의 순자산가치가 일정금액

41) '98. 7. 1일 기준이며, 세부사항은 <부록5>의 주별 손해보험보증기금 참조

42) 총 52개주중 California주, Georgia주 등 21개주

43) 총 52개주중 New York주, Delaware주, Massachusetts주 등 16개주

44) 2개의 계정구분은 Illinois주 등 8개주, 4개의 계정구분은 Maryland 등 4개주, 5개의 계정구분은 Michigan주 등 2개주, 6개의 계정구분은 Wisconsin주임.

45) Florida주 등 일부 주(10개주)에서는 근로자재해보험의 경우 separate state fund에서 보전하거나, Arkansas주는 보전금 최고한도 규정을 동일 적용하거나, Michigan주에서는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전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46) 단, 뉴욕주의 경우 1계약당 \$100만 ~ \$500만 수준임.

이상⁴⁷⁾인 경우에 면책조항 또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증기금 보전금이 회수가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o 보험보증기금의 각출 (assessment) :

- 보증기금의 각출료 납부방식은 전체 52개주중 뉴욕주의 사전각출방식(pre-assessment guaranty fund)⁴⁸⁾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사후각출방식(post-assessment guaranty fund)을 적용하고 있음.
- 어느 상태에서 특정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보험회사의 보험지급금 부족분을 각 보험사의 시장규모(원수보험료 : direct premium written 기준)에 따라서 할당받으며, 동금액을 보증기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임.
- 한편 연간 각출료 최고한도는 대부분의 상태에서 직전 사업연도 원수보험료의 약 1.0 ~ 2.0%로 제한하고 있음.⁴⁹⁾
- 그러나 보증기금 각출료에 대해서는 모든 상태에서 여러 형태로 공제조항(recoupment)을 두고 있음. 보험료 공제형태는 보험료세 공제(premium tax offset), 또는 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 추징(premium surcharge), 혹은 이 두가지를 혼합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⁵⁰⁾

47) 대부분 순자산가치 \$5,00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일부 주의 경우 \$1,000만 또는 \$2,50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48) 단, 보험보증기금의 적립액이 \$2억 이상의 경우는 각출증지, \$1.5억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만큼 사후적으로 추가 각출함.

49) '95년말 기준으로 손해보험 보증기금 각출액의 순적립액 총액은 \$56.8억임.

50) 실제로 지난 1995년 한해동안에 할당된 총각출금액은 \$2억 6,600이었으나, 각종 공제방식에 의해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각출규모는 \$6,660만임.

나) 生命·健康保險保證基金⁵¹⁾

○ 보증기금내의 계정(account) 구분 형태 :

- 대부분의 州에서 생명보험(Life Insurance),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연금(Annuity) 등으로 구분하여, 州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상 3개의 분리계정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단, 일부의 州⁵²⁾에서만 확정각출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 또는 별도의 일반계정(general account)을 분리함으로서 4개의 계정을 가진 보증기금 형태도 있음.

○ 보호대상 및 보전금 한도규모 (maximum claims) :

- 보증기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보험은 변액보험(variable life)처럼 계약자가 전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보험과 일부 재보험등이 있음.
- 이외에 비할당연금(unallocated annuities)⁵³⁾의 경우에 일부의 州에서만 보증기금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⁵⁴⁾, 나머지 州에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부분의 州에서 급부금형태 및 보험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하고, 동시에 보전금 총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
- 즉 생명보험의 사망급부금은 \$30만⁵⁵⁾, 적립금(해약환급금)은

51) '96. 12. 31일 기준이며, 세부사항은 <부록5>의 생명보험보증기금표 참조

52) 총 52개주중 Louisiana주 등 3개주

53) 즉 계약이 개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연금계약으로서 소위 보증부투자계약(Guarantees Investment Contracts : GICs)에 투자된 퇴직기금(pension fund)의 형태를 총괄하여 비할당연금계약이라고 함.

54) 총 52개주중 New York주, Minnesota주 등 23개주에서만 보증기금의 보호대상임. 그러나 동23개주에서도 변액보상이 아니고 평균 계약자 1인당 \$500만이며, 이중 몇몇 주의 보상한도액은 최저 \$100만(Alkansas주, NewYork주)에서 최고 \$750만(Minnesota주) 등 다양함.

55) 단, New Jersey주 및 Washington주의 경우는 \$500,000임.

\$10만이고, 건강 및 고도장애보험의 급부금은 \$10만⁵⁶⁾, 연금보험의 급부금은 \$10만~\$30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모든 상태에서 전체 보전금의 규모를 보험계약 건수에 관계없이 1계약자당 약 \$30만~\$50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보험보증기금의 각출 (assessment) :

- 보증기금의 각출료 납부방식은 손해보험 보증기금과 달리 모든 상태에서 사후각출방식⁵⁷⁾을 적용하고 있음.
- 즉, 어느 상태에서 특정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발생 및 이에 준하는 재무위험에 처했을 경우, 해당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나머지 보험회사가 보험지급금 부족분 또는 필요지원금을 각 보험사의 시장규모(통상적으로 수입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할당하여, 보증기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임.
- 다만, 각출료의 최고한도는 대부분의 상태에서 연간 수입보험료 (premium)의 2.0%⁵⁸⁾로 제한하고 있음.⁵⁹⁾
- 그러나 보증기금 각출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태에서 손해보험보증기금에서처럼 여러 형태로 공제조항(recoupment)을 두고 있음. 공제형태는 상태보험료세 공제(premium tax offset), 또는 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 추징(premium surcharge), 혹은 이 두가지를 혼합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56) 단, New Jersey주는 건강 및 고도장애보험의 경우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음.

57) New York주의 경우 1985년 이전까지 사전부과방식을 따랐으나 그 이후에 사전부과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일반적으로 사후납부금액은 크게 기금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상비용 (1회사당 고정비용)과 실제적인 보전행위를 위한 충당금(수입보험료 비례제)로 구분됨.

58) 단, California주 및 Texas주 등 5개주는 1%이며, Rhode Island주는 3%임.

59) 지난 '91년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 보증기금의 미국 전체 연간 각출료규모가 약 \$30억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60) 단, Washington주 및 Maryland주 등 7개주의 경우는 동조항이 없음.

나. 英國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설치 · 운영 근거는 지난 1982년 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y law) 및 1994년의 보험회사 규칙(Rule)에서 명시하고 있음.
 - 예탁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 또는 인정유가증권(permitted securities)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예탁하여야 함. 다만 재보험에 한정된 보험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탁의무가 없음.
 - EC역외 보험자에 대해 최저보증기금의 50% 이상을 최고법원 경리국장에게 공탁함을 의무화하고 있음.
 - 통상산업부(DTI)장관은 공탁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최고법원경리국장으로 하여금 변경사항 이행토록 지시할 수 있음.
- 예탁금의 운영주체는 감독당국이 아니고 통상산업부내의 보험국(제1과)이며, 예탁금 운영과 관련 보험사업자에게의 제재 명령권은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음. 그러나 보호예탁금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사업자에게 있음.
- 한편 보호예탁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반환 지급됨.
 - 예탁금 적립규모의 잉여금 발생분을 예탁자의 반환 신청시
 - 보험사업자가 영국에서 보험사업을 중지하고 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할 경우
 - 예탁자의 재정파산시 기금운용인에게 지급되며, 예탁자가 법원 청산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탁자인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됨.

2) 保險保證基金 制度

- 현행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근거법은 지난 1970년대초 다수의 中小보험회사 및 '74년 대형 보험사(National Life사)의 파산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5년에 만들어진 보험계약자보호법(Policyholders Protection Act)임.

- 동법(제1조)에 따라 계약자보호제도의 운용기관으로서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위원회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분야 모두를 관장함.
 - 단,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각각의 별도계정으로 운용됨. 한편 동위원회의 업무는 첫째,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清算의 경우와 둘째, 재무위험에 처한 경우에 따라 업무가 다름.
 - 보험계약자보호법은 그후 1997년에 대폭적인 개정⁶¹⁾을 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확보하였음.

- 보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
 - 보호대상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의 판단기준은 계약상의 리스크 또는 책임이 소재하는 장소, 보험회사 국적 등에 의해 결정됨.
 - 즉,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입시의 보험계약자의 주소(개인) 또는 사업장소(법인). 단, 家屋保險이나 家財保險은 건물의 소재지역,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등록장소, 4개월 이내의 휴가보

61) 법개정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의 계약자보호법에 의하면 영국 자국민 이외에 영국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의 계약자를 포함하여, 손해보험의 경우 법인 보험계약자 및 법인 파트너십 관계자까지 포함됨으로써 발생한 거액의 각출금 부담이 문제화되었기 때문임. 실제로 각출금 수준이 '92년이전에는 £250만 수준에서, '92년 £3,790만, '93년 £8,050만, '94년 £17,000만 등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었음.

험은 가입장소등이 기준이 됨. 생명보험은 개인의 경우 계약자의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체의 사업소재지가 기준이 됨.

- 현재 보험계약자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영국내 영업지점을 통해 영국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EEA국가⁶²⁾, Channel 群島 또는 Man島에 있는 경우
- ② 他 EEA국가의 영업지점을 통해 영국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에 있는 경우
- ③ EEA국가의 영업지점을 통해 EC국가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에 있는 경우
- ④ Channel群島 또는 Man島의 영업거점을 통하여 영국의 보험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험계약으로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 Channel群島 또는 Man島에 있는 경우

o 계약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대응조치는 첫째,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와 둘째, 재무위험에 처한 경우에 따라서 보전규모 등 세부적인 보전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보험회사 파산에 따른 청산의 경우 위원회의 대응 조치

- ① 손해보험의 경우 강제보험(자동차보험, 사용자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우선 청구권의 100% 전액을 보상하며, 非强制保險(임의보험)에 대해서는 90%까지만을 보상함.

단, 보호대상은 개인 보험계약자와 20인 미만의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에 한정됨.

62) 유럽경제연합(European Economy Area)으로 동연합에는 현재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가입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개국, 기타 1국가 등 총 18개국가가 소속되어 있음.

②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파산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 계약 급부액의 90%를 보상하며, 단 위원회가 보전 급부액이 과다하다는 판단할 경우에는 삭감도 가능함.

한편, 청산개시시 계속된 생명보험 계약의 지속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생보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생명보험사에 이전시키거나, 기존계약에 대신하여 타보험회사와 신규계약 체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음.

- 둘째, 보험회사가 재무위험에 처했을 시 동위원회의 대응조치⁶³⁾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구분없이 재무적으로 곤란에 처한 보험회사에 대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해줌. 다만, 동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동위원회는 보호되는 계약에 대해서 보전금지급의 연기 또는 계약상의 급부금의 삭감(예: 생명보험의 경우 최고 90%)등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계약자보호기금의 각출 (levy) :

- 위원회는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중개자(intermediary)에 대해서 사후부과방식으로 자금을 각출함.
- 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양측에 대해서 각출금을 부과하지만 중개자의 경우는 생명보험에 한하며, 다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각출금은 별도로 계정 관리함.
- 부과되는 각출금의 계산은 수입보험료(net premium)를 기준하여 부과하며, 동위원회는 필요시 자금차입⁶⁴⁾도 가능함.

63) 재정곤란에 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 즉 타보험회사로의 사업이전 및 사업계속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금원조 등은 무역산업장관(DTI)이 동위원회를 지휘하여 수행됨.

- 각출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보험료 규모 산정은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 이유는 수입보험료 계산⁶⁵⁾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 ① 영국 면허를 받아 영국에서 보험업을 하는 경우⁶⁶⁾
 - ② 영국의 EC국가 면허를 받고 영국에서 보험업을 하는 경우⁶⁷⁾
 - ③ 영국외에서 영국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⁶⁸⁾

- 각 보험회사의 각출금 납부액의 상한 수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수입보험료의 0.8% 이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수입보험료의 1.0%
 - ② 단, 무역산업부장관(DTI)은 각출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수입보험료의 최저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
따라서 최저액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일정비율을 곱한 각출금이 부과되고, 만약 해당년도 수입보험료가 동최저액 수준을 하회하는 보험사는 각출금납부 면제도 가능

64) 현재 차입금액의 한도액은 £4,000만 (개정전 최고액 £1,000만) 임.

65) 보험법 개정전에는 각출금 산출기준인 수입보험료(net premium income) 계산시 총보험료에서 리베이트료, 반환금(refund) 및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법개정후에는 재보험료는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각출금납부를 사업종료후 1개월내 일시납으로만 납부하도록하였으나, 현재는 분할납을 허용하고 있음.

66) 즉, 영국내의 보험, Man島 또는 Channel群島의 영업지점에서 발행되어 영국, Man島 또는 Channel群島에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 영국이외의 EEA국가에 있는 영업지점 통하여 발행되어 영국에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

67) 즉, 영국의 보험, 영국이외의 EEA국가내에 있는 영업지점을 통하여 발행되어 영국에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있는 보험

68) 즉, 리스크 또는 보험책임이 영국에 있는 보험

다. 日 本

1) 契約者 保護預託金 制度

- 지난 '96년 보험업법 개정시 폐지되었음. 그러나 외국계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90조의 “供託” 조항에 의거 일본내의 보험사업 사업허가시 예탁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계 보험사업자는 2억엔이며, 단 조건부면허생명보험사업자는 1천만엔임.⁶⁹⁾

2) 保險保證基金 制度

- 현행 제도는 지난 '98.12월 기존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 제도를 개편한 것⁷⁰⁾이며, 기존의 계약자보호기금은 동기구로 흡수됨.
 -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구 (1998. 12. 1일부 시행)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機構를 각각 별도의 인가법인 (민법상 公益法人)으로 설치하였음. 동제도는 과거 보험계약자보호기구와는 달리 모든 보험회사의 강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현행 계약자보호기구의 운용구조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救濟보험회사가 존재할 경우, 구제보험회사 측으로 보험계약을 포괄이전하고, 同機構에서 구제보험회사측에 자금을 지원함.
 - 파산 보험회사에 대한 救濟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同機構에 보험계약을 포괄이전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지속 유지를 추진함.

69) 보험업법 시행령 제24조~제35조 참조

70) 기존의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의 최고 적립한도가 2,000억엔 이었으나, 지난 '97.4월 日産생명의 파산(총초과부채 규모 3,029억엔)시 모두 사용하였음.

<표 12>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구 분		2001년 3월말까지 (경과조치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대상 계약 및 보상 내용	개인연금보험 재형연금보험	100% 보상	
	개인보험 단체보험	· 사망보험금, 100%보상 입원금부금 “ · 해약환급금 90% 보상	90 % 보상
	단체연금보험	· 90% 보상	
업 계 부 담	연간 부담액	右記금액 (600억엔/년) + 60억엔의 특별부담금(운용 경비)	600억엔/년 (日産生命分 250억엔 포함)
	사전적립한도액	4,000억엔 (동금액 이상의 경우 향후 재결정 예정)	
	機構의 借入限度額	右記금액(4,000억엔) + 600 억엔	4,000억엔으로 잠정결정

<표 13> 일본의 손해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2001년 3월말까지 (경과조치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대상 계약 및 보상 내용	지진(가계성), 자배책	100% 보상	
	화재(개인 및 중소기업), 자동차, 상해보험, 간호비용, 의료비용	· 보험금 100% 보상 · 연금 및 재형 100% 보상 적립금 · 책임준비금·해 90% 보상 약환급금	90 % 보상
	상기 이외의 종류 (원자력, 선박, 항공, 보중 등)	· 보험금 100% 보상 · 책임준비금·해 손율에 따라 약환급금 보상	결손율에 따라 보상
업 계 부 담	연간 부담액	右記금액(50억엔/년) + 15억 엔/년특별부담금	50억엔/년(機構의 정관에 규정, 東京海上의 연간부담 은 약 9억엔)
	사전적립한도액	500억엔 (연간부담액의 10배, 機構의 정관에서 규정)	
	機構의 차입한도액	右記금액(500억엔)+ 150억엔 총650억엔	500억엔으로 잠정결정 (단, 시행령에서 규정, 사전 적립액과는 별개)

- 분담금 각출은 직전3개년(생명보험) 또는 직전년도(손해보험)의 보호 대상계약의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함. 이중 定款에서 정한 가감항목 금액을 고려하여 해당년수로 나눈 후 각사별 차등 부담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함.⁷¹⁾
 - 부담금은 “ $\frac{\sum P \times \text{부담금률}(a) + \sum V \times \text{부담금률}(b)}{2}$ ”⁷²⁾式에 의함.
 - 실제 각사의 부담금률은 계약보호기구의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그 방법은 보호기구 총자금에 대해서 수입보험료($\sum P$)에 의한 부담액과 책임준비금($\sum V$)에 의한 부담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 부담금률 (a) 및 (b) 수준 및 각사의 각출금이 결정됨.
 - 단, 2001년 3월말까지는 회원 부담금률의 최저한도가 적용되는 바, $\sum P$ 의 부담금률은 0.197%(생명보험) 및 0.038%(손해보험) $\sum V$ 의 부담금률은 0.012%(생명보험) 및 0.007%(손해보험) 임.

- 한편 각출도중 기적립액 보호자금의 부족시에는 기적립액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보험사로부터 機構에서 차입⁷³⁾한 공적자금으로 부족분을 처리하고 후일 변제함. 현재까지 부족분에 대한 사후각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음.⁷⁴⁾

71) 보호기구에 납부하는 각출금은 損金算入되어 법인세 소득공제에 포함됨.

72) 수입보험료 기준 및 책임준비금 기준의 각각의 실제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1-1) 생명보험의 $\sum P$ (직전 3개 사업년도 기준) =

[수입보험료 - (책임준비금전입액 + 해약환급금 등 + 만기보험금·연금액, 단체연금 일시금 및 생존급부금) + (이자배당수입-지급이자)] ÷ 3

(1-2) 생명보험의 $\sum V$ (직전 3개 사업년도 기준) =

[연도말책임준비금 - 위험준비금 + 출재보험에 관한 책임준비금] ÷ 3

(2) 손해보험의 $\sum P$ (직전사업년도 기준)은 [수입보험료 - (환급금으로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며, $\sum V$ (직전사업년도 기준)은 [연도말책임준비금 + 지급비금 + 사원배당준비금]

73) 보험업법 시행형상의 차입금 한도액은 계약자보호기구의 회원 연간부담금의 10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74) 단, 부담금 납부으로 건전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부담금률을 적용함.